

[번역]

2007년 6월 30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대한민국 서울

김현종 본부장 귀하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19장(노동) 제19.5조(제도적 장치)제3항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제19장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인으로부터의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19.5조제3항과 합치되게 적절한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제19.5조제3항은 당사국에게 그러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한 기존의 채널과 중복되는 새로운 절차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당사국이 제19장과 관련된 그 밖의 사안에 관한 의견을 검토하는 다른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제19.5조제3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자국이 수립하는 새로운 절차의 범위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노동 사안에 관한 의견으로 한정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사소하거나 가치가 없는 의견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것과 각 당사국이 의견을 검토할 때 (1) 의견을 제출하는 인 또는 그 밖의 인이

다른 쪽 당사국의 관련 국내법에 따라 그 사안에 관한 구제를 구하였는지,
(2) 그 사안이 국제기구에 계류 중인지, 그리고 (3) 그 의견이 그 사안에 관
한 최근의 다른 의견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상호
이익이 됨을 인정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명/
수잔 C. 슈와브